

EU회원국의 통신시장규제 이행점검

- EU집행위원회보고서를 중심으로 -

■ 김 성 웅*

2년 이상을 진행해왔던 한-EU FTA가 타결 및 가서명되어 내년 정식서명 및 비준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FTA 체결 이후의 후속 이행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해졌다. EU는 회원국이 27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통신 분야에 있어 EU가 지향하는 규제틀로의 조화로운 이행 및 회원국 간 수렴이 EU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관련, 단일한 유럽 통신시장에 관한 이행보고서는 EU 회원국의 통신시장 규제의 조화 및 이행조치를 EU 집행위원회가 매년 검토하여 발간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의 FTA 체결상대국이 된 EU 및 EU 회원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국 규제당국의 독립성, 규제 개선을 위한 이행조치, 유무선 및 광대역 등 분야별 규제 이행, 보편적서비스 의무 관련 조치, 행정수수료 등 수평적 규제, 주파수 결정 이행 및 할당의 조화 등은 집행위원회가 주시하는 회원국간의 대표적인 단일한 통신시장 규제 이행 분야이다. EU 회원국들 중 주로 동유럽 및 신규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이행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이행문제로 인해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이행조치를 부여하거나 결정을 채택하는 바, 향후 매년 이뤄지는 이행 점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EU의 우리시장 진출 및 우리기업의 EU 시장 진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우리로서는 통신시장에 대한 자체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실 방송통신통상센터 연구원, (02)570-4436, woongnice@kisd.re.kr

목 차

I. 서 론 / 26
II. EU 통신시장 현황 / 28
1. 개 요 / 28
2. 유선시장 / 31
3. 무선시장 / 32
4. 브로드밴드시장 / 34
III. EU 회원국의 통신시장규제 이행점검 / 36
1. 개 요 / 36
2. 규제당국의 독립성 / 36
3. 규제 관련조치의 이행 / 38
4. 소비자 보호 및 수평적 규제 / 44
5. 주파수 관리 / 47
IV. 결 론 / 51

I. 서 론

우리나라는 FTA 추진 로드맵¹⁾에 의거하여 지난 2년 반 동안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다수의 회기간협상 등 비공식협상 및 8차에 걸친 정식협상

을 끝으로 FTA의 완료에 다가가고 있다.²⁾ 통신분야 협상 역시 협정문과 양허안 내용을 상호간 신중하게 논의하여 호혜적인 결과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체결로 인해 정부의 동시다발적, 전략적 FTA 정책³⁾의 일환으로 추진된 FTA 협상의 결실이 세계최대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EU와의 FTA에서 전환점을 돌게 되었다. 미국 이후 FTA 거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우리에게 EU는 또 하나의 대륙거점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향후 중남미, 대양주, 중동 등 대륙별 FTA 네트워크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⁴⁾ 또한 한-EU FTA 체결은 담보상태에 있는 한-미 FTA 비준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U 역시 한국과의 FTA가 아시아지역에서 첫번째 체결하는 FTA로 아시아 시

- 1) 2003년 8월 수립한 'FTA 추진 로드맵'에서 정부는 경제적 이익과 산업시스템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대 선진경제권(미국, EU)과의 FTA 협상에 주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을 가진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FTA를 통해 신규 소비시장 확보 및 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협상 진행 경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3) 정부는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으며, 2008년 부터는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 4) 현재까지 5개권역(17개국)과의 FTA를 체결 및 타결하고 45개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기타 7개 권역과 FTA 협상을 위한 여건조성 중에 있다.(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상품/서비스), 미국, 인도, EU와 기타결, ASEAN(투자), 캐나다, 멕시코, 일본,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와 협상 진행중, 중국, MERCOSUR, 터키, 러시아와 여건조성 중임)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북미 시장으로의 시장진입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⁵⁾ EU 집행위원회도 한국과의 FTA 협상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회원국들로부터 부여받아 매우 공격적인 FTA 체결을 진행해 왔고, 한-EU FTA를 통해 EU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무역창출 및 서비스 시장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⁶⁾

한-EU FTA가 지난 10월 15일 가서명⁷⁾이 완료된 상황에서 아직 정식서명과 비준 절차를 기다려야 하지만, FTA 체결대상국의 국내 시장규제 이행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향후 비준 이후에도 FTA 이행조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3월 브뤼셀에서 단일한 유럽 통신시장에 관한 이행보고서⁸⁾가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보고서는 매년 EU 회원국의 통신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단일한 조화를 추구하는 EU의 지향점에 맞춰 회원국의 규제 관련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감시보고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통신, 금융, 법률 등 서비스 부문은 EU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로 EU 회원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⁹⁾ 이에

5) 한-EU FTA로 인해 EU에 예상되는 주요 혜택은 대한국 EU 수출업체에 대한 16억 유로의 신속한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에 있어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창출, 실질적인 비관세장벽의 제거 등이 있다.(EU의 FTA 체결현황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6) 한-EU FTA 가서명과 관련된 EU 집행위의 Memo 내용

<http://blog.naver.com/xfile02?Redirect=Log&logNo=150072474636>

7) 가서명은 FTA안에 대한 법적 협의의 종료를 의미하며, EU 집행위는 동 FTA안을 2010년초 회원국들에게 공식 제출하게 된다. EU의장국과 집행위원회의 서명 이후 FTA안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며, 승인되면 발효된다. 국내에서는 협정문 정식서명 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승인되고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하면 협정 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양측은 번역작업이 완료된 협정문에 내년 1분기, 늦어도 4월 이전에 정식서명하고 각자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께 발효시킨다는 목표 아래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한-EU FTA 협상경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선진미래연대(2009. 10. 16)

8) 정식명칭은 PROGRESS REPORT ON THE SINGL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MARKET(14th Report) {COM(2009) 140 final}

9) 금융, 통신, 법률, 해운, 환경 등의 서비스 분야는 FTA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접근 확대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EU FTA 가서명과 관련된 EU 집행위의 Memo 내용 참조.

대한 대응으로 EU 시장에서의 회원국 규제기관 및 기업들의 사례를 검토 분석하는 것은 협상완료 이후에도 우리에게 보다 더 능동적인 대응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및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27개 EU 회원국의 최근 통신현황 및 그와 관련된 시장 규제의 이행정도 및 분야별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보고 FTA 협상대상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동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EU 통신시장의 최근 현황 및 흐름을 살펴본 후 상기한 EU집행위원회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EU 회원국의 통신시장 규제 이행사항을 점검해본다.

II. EU 통신시장 현황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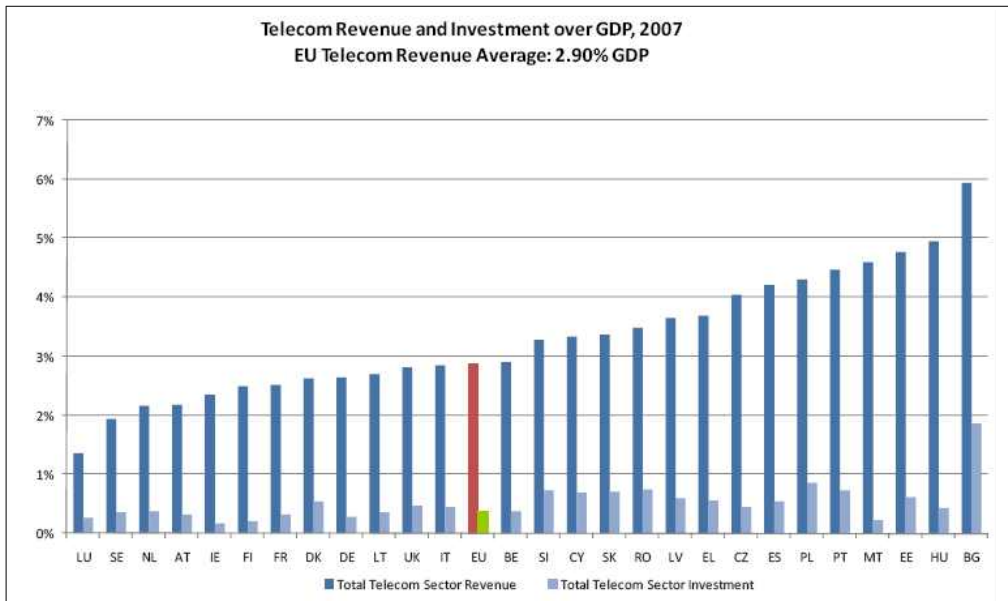
EU 전자통신 시장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FTA 상대국가 들에 비해 매우 진보적인 시장 특성을 보인다. EU 국가들은 브로드밴드 보급율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EU 국가들의 모바일 인터넷 성장세 가속화로 인해 대부분의 서비스 사용료는 인하되고, 결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침체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지만, 요금 인하 및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이라는 기본통신 서비스 특징 덕분에 현금 유출입 강세가 지속되어 2002년에는 경제위기로부터 통신분야가 영향을 받았던 것과 달리, 경제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통신분야와 관련된 매출액 등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시장 상황으로 인해, EU 단일시장내에 공평한 경쟁을 확보하고 예측성 및 정확성을 높여주기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2008년 EU지역의 통신 부문 성장률은 경제 전반의 GDP 1% 증가를 다소 웃도는

수준인 1.3%였다. 통신 분야는 상술했듯이 현금 흐름의 안정성으로 다른 분야와 비교할때 경제 위기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장 투자와 관련된 신용 위기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008년 통신분야 총수익은 전체 ICT부문의 52%를 차지하였고, 2007년 국가규제 당국이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통신부문 수익은 GDP의 2.9%에 해당하는 3,570억 유로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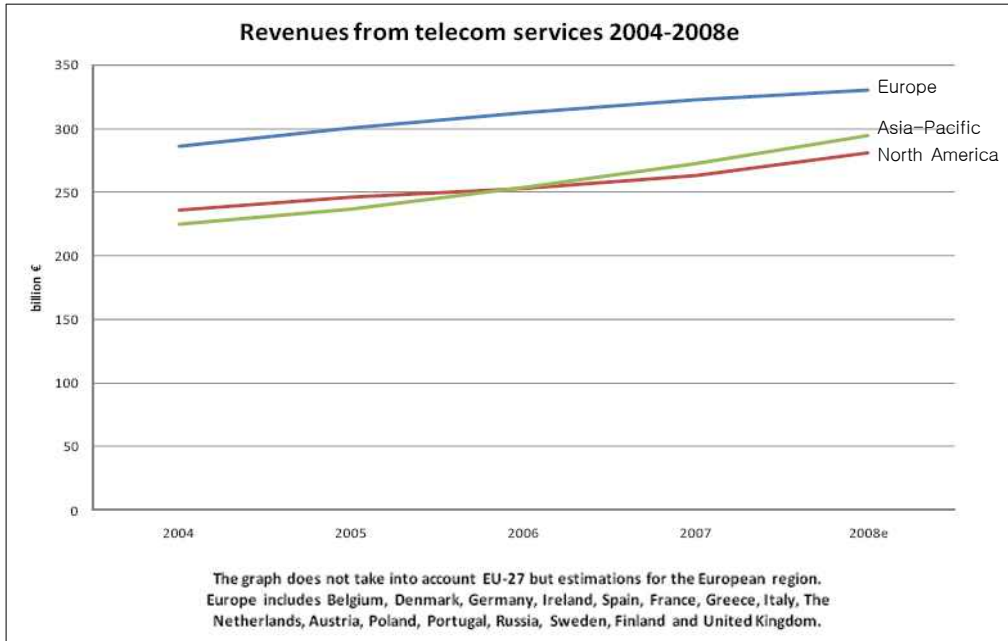
[그림 1] GDP 대비 통신 분야 총수익 및 투자율(2007)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

2007년 통신분야 투자규모는 1.5%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6년 연속 성장이었다. 세계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세는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통신서비스 매출액(2004~2008e)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

대부분의 통신 서비스 요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통신 부문이 현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U는 경쟁의 부족으로 인해 요금 인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문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의 로밍 규제¹⁰⁾는 로밍 요금을 60%까지 인하시켰고, 2009년 로밍요금 규제는 SMS 초과요금, 데이터 로밍 서비스까지 적용영역을 확대하였다.

유무선 브로드밴드 등과 같은 신규 서비스로 인해 네트워크 기반의 경쟁 잠재력이 확대되었고, 특히 2008년 유무선 시장의 번호이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전환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10)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activities/roaming/regulation/index_en.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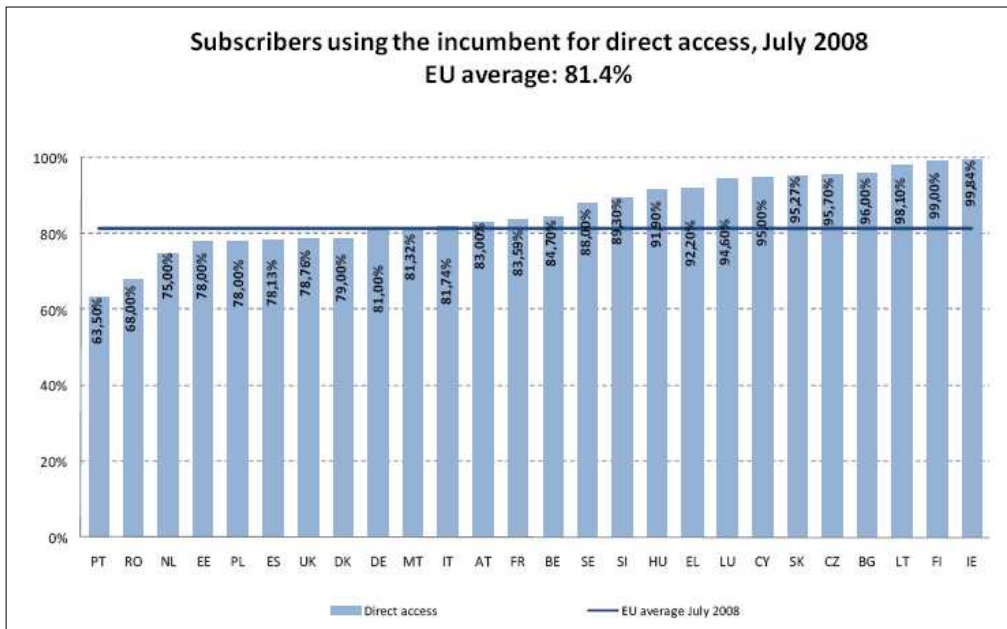
2. 유선시장

2008년 EU 지역에서 음성전화 등 전통적인 유선시장 수익은 전년과 유사한 정도인 5%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모바일 및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대체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유선시장의 기존사업자 시장 점유율은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였으며. 그 외 다른 사업자들의 기존사업자에 대한 직접 접속(direct access)의 경우 상당 수준의 성장폭을 보여, 2008년 7월 81.4%를 기록, 전년 대비 18.6%의 가입자가 증가하였다.

지방지역의 전화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고, 유선 상호접속 시장의 도매가격 또한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직접접속 목적으로 기존사업자를 이용하는 가입자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

한편, VoIP가 기존의 유선 전화를 대체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VoIP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 EU 시장 전체의 8.33%에 이르렀다. 현재 유럽 인구의 12.25%가 결합서비스(bundled offer)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다. 3분통화 및 10분통화 요금 모두 금년에 11.7% 인하되었고, 이는 2004년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 수준이었다.

3. 무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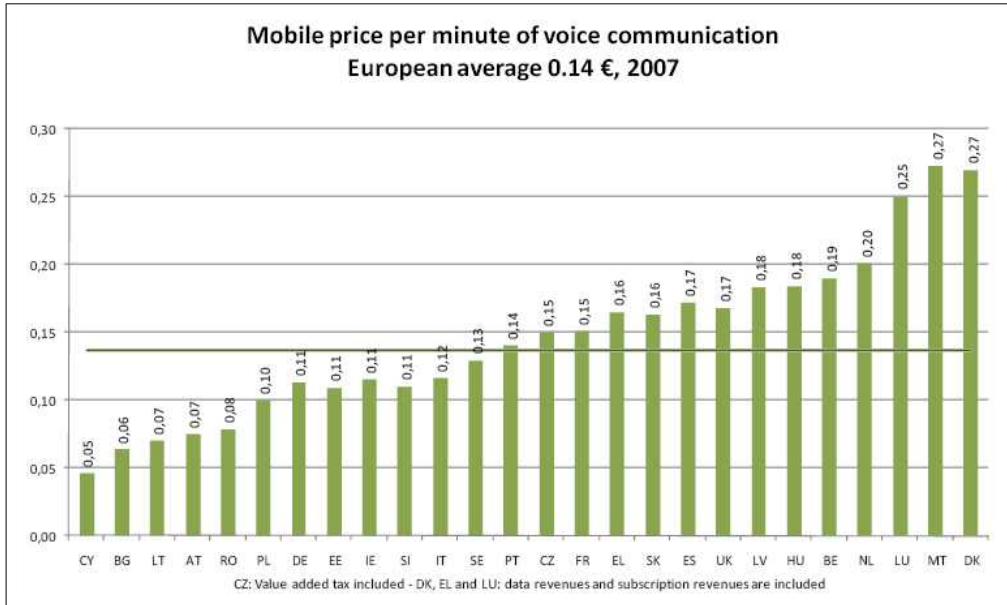
모바일 시장은 전화 사용량 증가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도입으로 인해 통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 요금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선 음성 서비스 및 회원국내 SMS 요금 인하가 주요 원인이다. 결국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는 사용량 증가로 인해 일부 상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EU는 국가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국가별 비용 및 구매력의 차이 또는 사업 모델 차이 및 경쟁 조건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회원국 간 규제의 차이 역시 또 다른 변수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08년 EU 평균 이동전화 요금은 2004년 이래로 34.5%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덴마크는 1분당 0.27유로, 키프로스는 0.05유로로 EU 회원국간 최대 가격 차이는 0.22유로에 달한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시장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수요 증가는 주파수 관리를 공동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해준다.

SMS(문자메시지)는 모바일 사업자들의 총수입액 중 11%를 차지하였다. SMS 1건당 요금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사업자들은 SMS 버킷(bucket)을 이용하여 건당 요금을 대폭 낮췄고 이에따라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창출하는 수익은 유럽이 미국보다 높다. 그러나 이는 국가별로 나타나는 경향일

뿐, SMS 로밍 요금 및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기존의 로밍 규제에 상기한 2개의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제안을 채택하였다.

[그림 4] 회원국별 무선 전화 1분당 가격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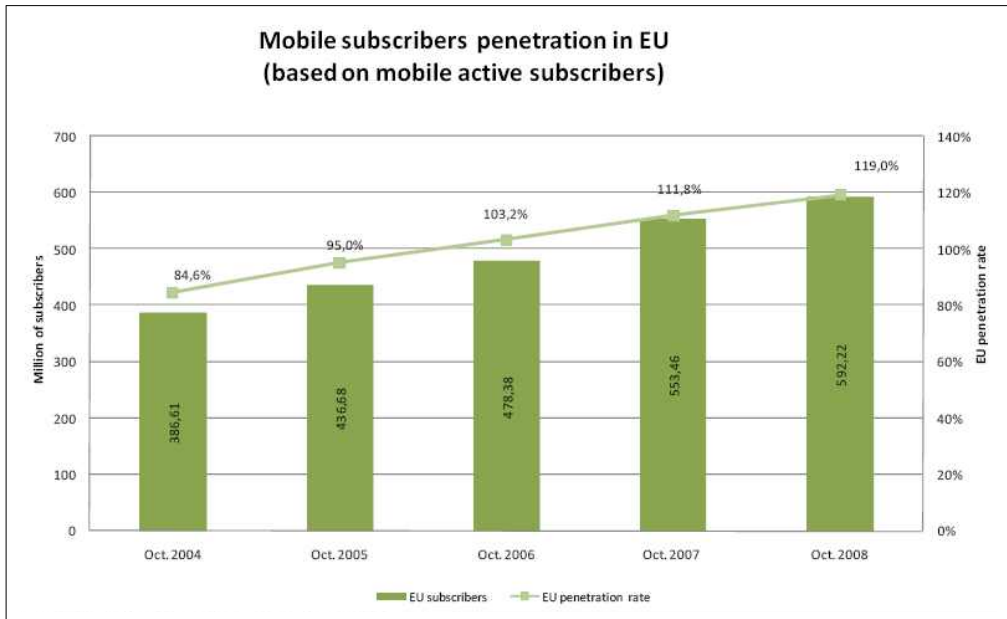
EU시장의 모바일 보급률은 2007년 112%에서 2008년 119%까지 증가하였다. 2007년 기준 일본의 84%, 미국의 8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¹¹⁾ 3G 서비스 사용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말 EU 전체적으로 9,130만 사용자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체 모바일 가입자수의 15.5%를 차지한다. 기존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평균점유율은 지난 2년간 3% 감소하여 약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동망 착신 접속료(MTRs : Mobile Termination Rates)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규제당국의 개입으로 상당히 낮아졌다. 2008년 10월 EU 지역의 분당 평균접속

11) OECD Communications Outlook(2009)

료는 8.55유로 센트를 기록, 전년 9.67유로 센트 대비 11.6% 감소하였다. 그러나 키 프로스 2.10유로 센트, 불가리아 15.92유로 센트 등 개별 국가별로 요금 수준의 차이가 아직 좁아지지 않고 있다.

[그림 5] 모바일 가입자수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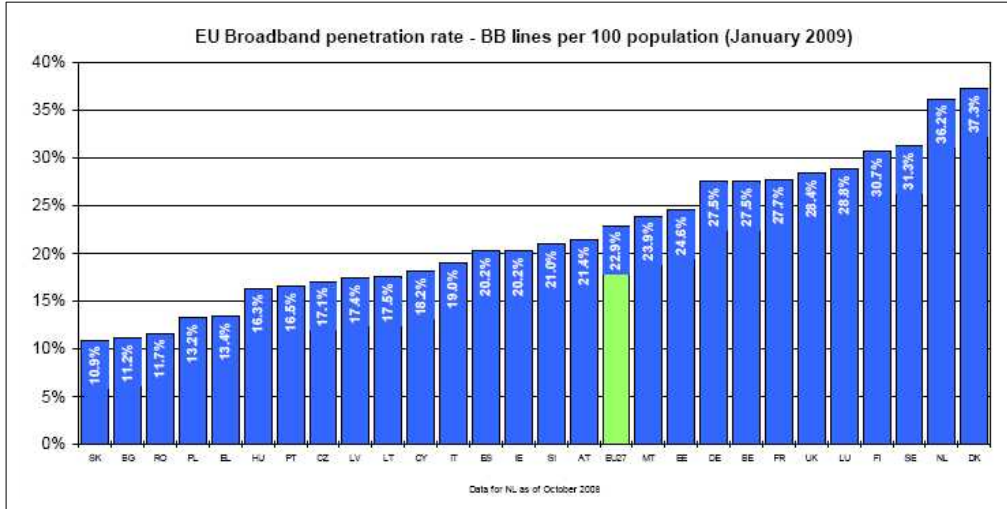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

4. 브로드밴드시장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꾸준히 성장해 2008년 EU 전체 평균 보급률이 22.9%에 이르렀다. 2008년 한 해 동안만 1,400만 개의 회선이 신규 설치되었다. 보급률에 있어 EU의 최고 수치와 최저 수치의 차이는 점점 좁혀져 가고 있어, 최저 국가인 슬로바키아와 최고 국가인 덴마크 간에 26.3%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그림 6〕 EU 브로드밴드 보급률(2009)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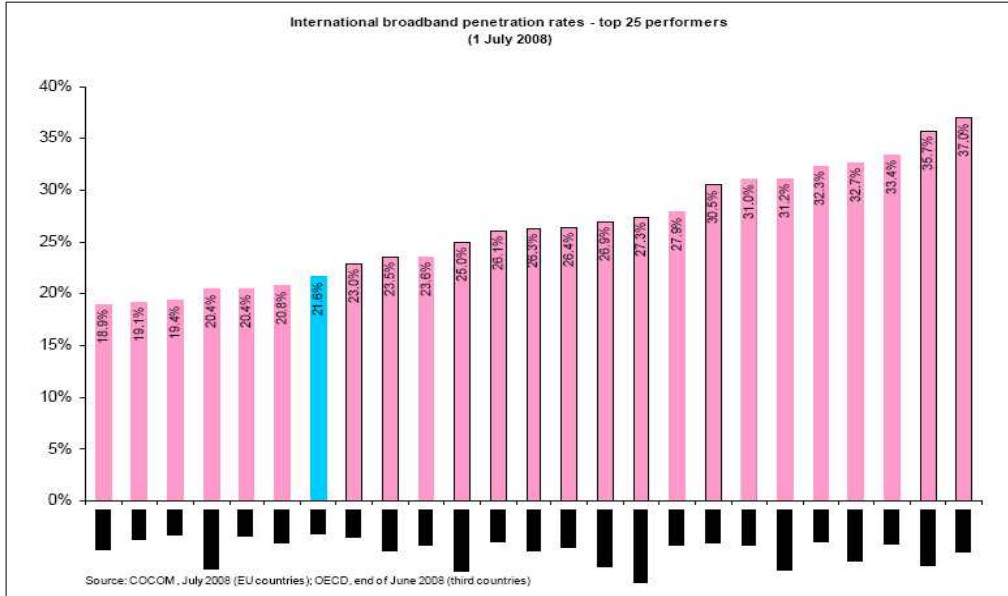
EU 브로드밴드 시장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는 세계시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 9개 국가가 이미 미국을 앞지른 상태이며 일본과 호주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한편, DSL(Digital Subscriber Line)은 여전히 주요 광대역 기술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광케이블 및 무선 등 대체 기술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다. 가입자망세분화상품(ULL: Unbundled Local Loop)의 경우 대체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전체 DSL라인 중 69.3%를 차지하고 있고, 도매 접속 가격은 감소 추세에 있다.

브로드밴드 월간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EU의 3분기 광대역 라인은 2Mbps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인터넷 TV를 볼 수 있는 속도에 해당된다.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평균 보급률이 13%에 이른다. 데이터카드/모뎀/키를 이용한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이보다 현저히 낮은 2.8%의 보급률에 그쳤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은, 모바일 기술의 전송속도가 유선 기술 보다 낮더라도, 이제 다수 회원국에서 유선 브로드밴드의 대체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7) 세계 브로드밴드 보급률 상위 25개국(2008)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

Ⅲ. EU 회원국의 통신시장규제 이행점검

1. 개요

EU 회원국의 통신시장이 단일한 EU 원칙에 따라 규제완화,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및 합리적인 주파수 관리를 실현하고 있는지는 분야별로 회원국들의 규제 이행사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우선 규제를 실시하는 규제당국의 독립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장별 규제이행, 소비자 이익 실현 및 공정한 주파수 관리 등에 대해 EU집행 위원회(이하 ‘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2. 규제당국의 독립성

통신시장의 전반적인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규제당국(NRA: National Regulation

Authority)의 독립성 및 효율성은 공정한 통신시장 규제의 필수요건이다. 즉, NRA는 어떠한 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규제 과정 상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독립성 및 공정성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그 안에서 국외 및 국내 시장진입자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U 회원국 규제기관의 독립성 문제는 FTA 협상에서 일부 국가의 사례가 줄곧 문제가 되어 왔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주로 동유럽 국가규제기관의 독립성 여부가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이 되어 왔다. 집행위원회는 상기한 규제기관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에 규제 기능과 사업자 소유권한 기능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고, 폴란드의 위법사항을 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으며 루마니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슬로바키아 규제기관장 해임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하였고, 규제와 소유의 철저한 분리를 위해 불가리아의 위법사항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었다.

2008년 1월 룩셈부르크에서는 규제기관의 사업자 통제 또는 소유와 관련된 기능과 본래 목적의 규제기능 간의 철저한 분리를 위해 새로운 법령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였다. 반면 이와 유사한 불가리아 사례에서는 분리 문제가 강력하게 다뤄졌고,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에서는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통신서비스 공급 사업 소유권 및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가 소송을 낸 상황이다.

폴란드의 NRA 수장은 부임기간을 조정할 권한이 없으며 타당한 이유 없이도 국무총리 권한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구조적 위법사항으로 인해 2008년 7월 사법재판소에 회부되었다. 루마니아에서 NRA위원장은 통신법 침해 이유 등으로 임기 완료 이전에 해임되었으나 법원의 결정이 미뤄져 임기 보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NRA 구조조정시 재취임되지 않았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디지털 방송전환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결과로 NRA위원장이 바로 해임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자신이 가진 권한의 범위와 관련되

어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규제당국은 시장규제와 소비자 보호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EU 지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NRA의 권한 범위가 확대되었다. 몰타는 e-inclusion과 e-business 관련 사항, 헝가리는 방송 서비스 규제, 루마니아는 인터넷 보안 및 도메인 명칭 관리에서 규제권한이 늘어났다. 규제기관의 권한은 경쟁법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이 없으면 공정성이 실현되지 못한다.¹²⁾ 일부 국가의 NRA는 사전적 규제 이행과 관련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행정 벌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율적인 규제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벨기에, 네덜란드는 규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행정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규제당국은 규제 의무사항을 감독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의 NRA는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벌금 정책 및 사업 평가방식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통신부문 위반 행위를 방지하였고, 키프러스에서는 기존의 국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국고가 아닌 이익을 제기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라트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에서는 규제당국에 제공되는 시장 데이터의 보안유지가 규제당국의 개입이 잦아지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

3. 규제 관련조치의 이행

(1) 구제조치¹³⁾: 규제의 개선

EU회원국들의 구제조치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이행은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많은 회원국들은 구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시기적절한 방

12) 통신규제기관과 경쟁법 부서의 권한이 일원화 되어있는 곳도 있다. 에스토니아는 2008년 규제당국이 사전적 규제 발표 및 일반적 경쟁법 적용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13) 구제조치(remedies)는 본고에서는 규제와 관련하여 집행위가 제시 또는 권고한 회원국들의 규제 완화 및 규제철폐 이행을 위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조치로 정의한다.

법으로 규제조치를 집행하는데 실패하였다. 집행위원회의 공청회 과정에서 위원회는 NRA가 규제조치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 획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의 규제조치 실시의 결과는 그 전과 비교하여 시장정의의 변화가 없었다. 이에 EU 규제를 개혁을 위한 위원회 제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관련시장에 대한 개정된 권고안에서 사전적 규제에 영향받는 시장을 18개에서 7개로 제한하였고, 뒤이은 NRA의 시장 분석에 따라 부분적인 규제철폐가 시행되었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많은 NRA가 소매 전화 시장의 규제를 철폐하였으며, 덴마크의 경우 도매 전송 시장과 전용회선의 도매 트렁크 부분의 규제를 철폐하였다.

2008년에는 전반적인 규제철폐가 진행되어, 일부 NRA는 도매 광대역 접속 시장의 모든 혹은 일부 의무 조항들을 이미 철폐했거나 철폐하는 단계에 있다. 영국, 포르투갈처럼 지리적으로 다른 시장을 정의하거나, 오스트리아처럼 지역별로 다른 규제조치를 내놓음으로써 규제 철폐를 진행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다. 특히 영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회선 중단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규제를 철폐했다.

한편, 회원국 규제당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서 배제되었던 일부 시장들을 지속적으로 규제해 왔다. 이 경우 NRA는 해당 권고사항에서 제시하는 사전적 규제의 3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전용회선 설비 시장과 전용회선 부분의 도매 트렁크 시장이 규제되고, 벨기에의 경우 NRA가 소매 전화 시장 규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결국 효과적인 규제조치의 이행 즉 규제의 적용이나 철폐는 각국의 규제당국이 어떻게 이행을 실천하나에 달려있다. 적합한 준수조항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수조항을 이행함으로써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부과된 의무의 효과적인 이행이 지연되면 사업자들의 시장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표준상호접속제안(RIO: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은 상품에 적용되는 경제적, 기술적 조건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데, 몇 가지 주요 접속 상품의 제안 승인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반면, 규제조치 이행의 실패 문제, 해당 접속 상품의 적절하지 않은 기술적 경제적 요건, 다른 접속 상품 요건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키프로스, 스웨덴, 라트비아 등에서 나타나자, 규제당국은 해당 규제조치의 세부사항 이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병설(collocation) 등 가입자망세분화(LLU) 서비스의 보조 조항 구체화(그리스), 주요 이행지표 발표 의무화(벨기에) 등도 그러한 사례이다.

한편, 가격 통제 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제방법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키프로스, 슬로바키아는 소매 마이너스(retail minus) 방식을 사용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 원가지향(cost orientation) 방법을 도입하였으나, 원가지향 방법의 경우도 국가별로 다른 원가계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다.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장기평균증분원가(LRAIC, Long run average incremental costs), 그리스, 헝가리는 상향식(bottom up) LRAIC, 리투아니아의 유선 접속료는 혼합형(hybrid) LRAIC을 채택하였고, 핀란드는 특별 비용계산모델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더우기 포르투갈, 폴란드는 아직 원가지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벤치마킹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 NRA는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사업자들에게 규제조치의 세부사항(원가기반 가격 측정, 적합한 원가계산 모델 선택 등)을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간 차이는 시장 규제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는 시장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장기적인 분쟁 해결 및 소송 절차로 인해 효과적인 규제 이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

2007년과 마찬가지로 일부 회원국은 SMP사업자 분리 계획을 시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SMP 사업자와 기타 사업자간의 대우와 관련하여 비차별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다. 스웨덴은 집행위원회의 승인하에 NRA

가 기존 지배적사업자들을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도입하였다. 이탈리아 역시 스웨덴과 유사한 관련법 도입이 논의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도입시 EU 규제들과의 양립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위와 같은 EU 국가간의 규제조치 이행상의 불일치는 유선, 무선(모바일), 브로드밴드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유선시장의 이행

유선 시장의 규제 철폐는 2008년도에도 지속되었다. 조사에 의하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체코,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의 규제당국은 소매 분야 유선전화 시장의 규제를 철폐하였다. 덴마크도 임대회선 시장의 도매 부문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자 규제조치를 철폐하였고,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새로운 RIO를 발표하고, 몰타, 포르투갈은 기존의 RIO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네덜란드는 소매 시장에서 지역거주자가 아닌 고객들에게 해당되는 기존의 규제는 관련 도매 규제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이전까지는 철폐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고, 벨기에는 소매 전화 시장 부문의 규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유선전화 착신접속(termination) 시장에는 효율 규제와 같은 몇 가지 규제조치가 이행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제3사업자들에게 유선 접속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사업자들은 접속료를 기존사업자와의 상호접속협정에 기반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일랜드, 이탈리아에서는 제3사업자들이 효율적인 요금을 상정해 가고 있다.

위원회는 유선 및 무선 접속료를 다르게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사업자의 비용에 근거하여 조화로운 접속료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다.

(3) 무선시장의 이행

대부분의 규제당국은 이동망 착신접속료(MTR)를 줄이기 위해 원가지향적인 효율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무선 접속요율은 국가가 채택한 원가 계산 방법과 모델상의 차이 및 (비)대칭 규제에 따라 제각기 다양하다. 슬로바키아는 효율

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룩셈부르크, 헝가리, 프랑스 등에서는 이동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3G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으며, 신규 3G 라이선스가 발급되었거나 발급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주파수대역을 공유하는 두개 사업체에 3G 자격을 부여하였고, 슬로베니아는 UMTS 라이선스가 무료로 발급됨으로써 이전에 허가 받은 사업체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다.

한편, 로밍 규제 역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됨에 따라, 2008년 8월까지 2차에 걸쳐 로밍요금을 일제히 인하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은 규제가 허용하는 가능범위의 최대치로 로밍요금을 설정하였다. 체코는 한 사업자만이 2008년 7월 EU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표준상호접속 교환요율(reference exchange rate)을 사용하였다. 불가리아, 독일,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는 로밍 규제사항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과 관련된 기본조항들이 아직은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2008년 9월 23일 로밍규제 기한 및 범위를 연장하는 안을 채택하였다. 이같은 로밍 규제에는 2008년 말까지 위원회의 시장조사를 촉구하는 검토조항, 음성 로밍 가격, SMS 및 데이터 로밍 서비스 개선 조항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위원회가 제안한 로밍 규제 수정안에 의하면 규제기한은 3년 더 연장되었으며 도소매 음성 로밍에 새로운 가격 상한을 설정하였고, 모든 로밍 전화에 초당 요금을 설정하였으며, 소매 단위 전화에 붙는 최소요금부과시간(minimum charging interval)을 30초까지 허용하였다. 규제 수정안은 특히 음성 로밍 부분의 시장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데이터 로밍과 관련, 수정안은 도매 요금을 제한하고 있다.

(4) 도매 광대역시장의 이행

대부분의 인프라 접속 시장과 광대역 접속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SMP가 관찰된다. 규제당국은 위의 두 주요 시장에 규제조치를 실행한 바 있으며 진전된 규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규제조치에는 원가지향가격, 회계분리, 비차별, 투명성, 접속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몰타의 NRA는 광대역 접속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의무사항을 모두 폐지하였다. 영국과 포르투갈의 NRA는 기존 규제를 이미 철폐하였거나 철폐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실행된 규제조치가 아직 미비한 점들이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아닌 다른 제3사업자들도 비트스트림(bitstream) 제품과 이와 관련된 표준상호접속제안(RIO)의 활용이 가능해 졌으나 아직 품질 및 가격의 개선이 필요하다.

광대역시장 가격의무 이행의 다양한 방법 중 소매-마이너스 접근법과 원가지향 원칙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원가지향 모델은 국가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바, 슬로바키아는 LLU 접속 부문에는 가격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가격을 인하하였고, 체코는 도매 광대역 접속 시장에 어떠한 가격 규정도 적용하지 않았다. 가격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한 사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일부 회원국들은 정보 공개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폴란드에서는 제3사업자들이 기존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별적 정보 접근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몇몇 국가 NRA들은 강력한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비차별적인 준수사항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한편 사업자간, 도매 상품간의 거래문제는 핵심 규제 사항 중 하나로, 현재 규제가 실행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 아일랜드이고, 독일, 영국, 벨기에의 경우 아직은 논의 중에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결합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규제당국은 기존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보다 분명히 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감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일부 규제당국은 이윤압착심사(margin squeeze test)를 시행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체코, 말타, 헝가리, 룩셈부르크에 서는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자와의 시장 경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4. 소비자 보호 및 수평적 규제

(1) 보편적서비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실수요자에게 적정수준의 요금과 품질로 공급되는 기본 서비스이다. EU의 보편적서비스지침에는 ‘공동체 전역에 걸쳐서 효율적인 경쟁과 선택을 통하여 공중에게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제1조), ‘모든 최종 이용자들이 경쟁을 왜곡하는 것 없이 특정한 국가의 조건의 관점에서 적정한 요금에 접근하는 특정한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서비스’(제2조)라고 규정되어 있다.¹⁴⁾

위원회는 보편적서비스 범위에 대한 정기검토를 실시하여 2008년 9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현 수준의 서비스 범위에 대해 변경사항은 없었으나 향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내용은 광대역 서비스에 집중되었다. 2008년에 보편적서비스 의무 내용상에 변화가 있었던 국가는 체코, 헝가리, 핀란드, 스페인, 키프로스, 덴마크 등이며, 변화 준비단계에 있는 국가는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몰타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회원국들은 기존의 보편적서비스 의무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은 보편적서비스 공급자를 지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라 일부 다른 회원국들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헝가리는 유선 분야에서의 접속 공급 의무를 없애고 공중전화 수를 줄였고, 라트비아는 향후 사업자 지정시 유선에의 접속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제안하였으며, 슬로바키아는 대도시의 공중전화 공급수를 줄였다. 덴마크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공중전화 공급 의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디렉토리 서비스 공급의 경우 장애인과 같은 특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만 의무화하였다. 체코도 디렉토리 및 디렉토리 조사 서비스 공급을 보편적서비스 의무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을 위한 특별 요금 제공 의무도 제

14) 지침은 또한 보편적서비스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지역, 국내, 국제 전화, 팩스 통신, 인터넷 접속 수신·발신 ② 모든 유선, 모바일 가입자 대상의 통합 디렉토리 및 디렉토리 조사 서비스 ③ 공중전화 ④ 장애인, 저소득 계층이나 이 밖의 특수상황에 놓인 사용자들의 원활한 전화 사용을 보장하는 서비스.

외하였다.

반면 보편적서비스 의무사항에 내용을 추가한 회원국들도 있다. 덴마크는 ISDN서비스, 전용회선, 해양 긴급서비스를 추가하였고, 스페인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추가하는 법안을 승인하였고, 핀란드는 2008년 말 보편적서비스의 브로드밴드 공급 속도를 1Mbps로 증가하는 계획을 채택하였다. 프랑스는 2010년까지 브로드밴드 공급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보편적서비스 공급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많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불가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경우 2002년도의 규제들에서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다.

회원국들에게는 보편적서비스 공급의 자국내 구조를 고려하여 각국에 가장 적합한 지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2008년 6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일부 사업자만이 전국의 보편적서비스 공급을 전담하는 프랑스의 차별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보편적서비스 공급의무 할당의 메커니즘은 어떠한 사업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보편적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 객관성 원칙의 보장, 비차별적인 시장원칙 왜곡 최소화 등을 강조해온 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다음으로 보편적서비스의 재정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이행현황 문제가 있다. 보편적서비스지침의 해당 규칙¹⁵⁾에 따라 보편적서비스 지정사업자들의 순비용은 보상된다. 투명성, 비차별, 비례성 등의 원칙에 맞게 통신규제기관의 감독하에 독립적인 분담제도 설립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공 기금이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로부터 획득한 특수 기금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핀란드는 공공기금으로만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라트비아는 보상 구조상의 과도기인 2007년에는 공공 기금을 운영하였으며, 특수 기금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러한 구조로 운용이 지속될 전망이다. 체코의 경우는 공공 펀드로만 운영하는 보상 메커니즘 계획안이 제시되었으나, 아직 의회의 승인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15) 보편적서비스지침 제13조 보편적서비스 자원(Financing of universal service obligations)

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2008년 일부 서비스 의무 지정사업자들이 NRA에 보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아직 보상청구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아일랜드 등이며, 이미 보상을 실시한 국가는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루마니아, 벨기에, 라트비아 등이다. 보상을 받은 경우도 행정상의 문제로 보상금이 나오기 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체코, 프랑스, 루마니아의 경우는 사업자 및 기관간 문제가 발생하여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2008년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EU 규칙에 어긋나는 보편적서비스 할당 및 재정 운영을 이유로 소송이 개시되었다.

(2) 행정수수료

EU 규제체계는 일반인가의 관리, 통제 및 집행 등 규제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 비용으로 인해 규제기관이 사업자에 부과하는 행정수수료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비용과 행정수수료 총액 간의 차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수수료 체제가 시장진입이나 시장경쟁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 규제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듯이 행정수수료 문제를 시장규제 부문과 연계하여 다루고 있다. 반면, 허가나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이용되는 모바일 및 사설통신 인프라에 대한 세금은 행정수수료 규칙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수수료 조항은 2008년 들어서 회원국 관리당국에 의해 전반적으로 준수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비용에 대한 행정수수료 제한과 관련하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이미 수취된 요금과 금액에는 행정수수료가 반영되지 않으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수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증에 허용되지 않는다. 스페인, 벨기에의 경우 NRA가 수납한 행정수수료의 여분은 국고로 회수되었다. 라트비아 규제당국은 연차보고서에서 통신 부문 규제와 우편, 에너지, 철도 부문 규제 사이의 행정 비용을 구분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한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헝가리는 국가규제당국의 행정수수료가 줄어들었다.

이와 반대로 일부 국가에서는 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 공급자, 특히 모바일 사업자에게 특별세가 부과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올해 말 공영 TV 방송 체제 개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는 바, 상정된 법안에는 통신 사업자, 인터넷 공급자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수수료 수준은 매출액의 0.9%에 해당하는 정도였다.

5. 주파수 관리

2008년 무선 주파수는 기존의 무선 서비스와 신규 무선 네트워크 등에 기여하여 전자통신 부문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 주파수 자유화 및 거래

2008년 일부 회원국이 추가적으로 주파수 관리에 시장기반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덴마크는 주파수법 초안에서 주파수의 2차 거래 및 기술중립적 사용을 명시하였고, 네덜란드에서도 덴마크와 유사한 주파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스는 교통통신부가 부분적인 주파수 거래를 허가하는 규제를 도입하였고, 포르투갈 규제당국은 최근 주파수할당에 기술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2008년 11월 위원회는 900MHz 대역에서 UMTS서비스 등 신규 모바일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GSM 지침을 일부 수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일부 국가들(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GSM 이외의 기술에 의존하는 서비스에 900MHz와 1800MHz 주파수 대역을 할당한다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루마니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2) 주파수 결정의 이행

EU 무선주파수위원회(Radio Spectrum Committee)는 회원국들로부터 국가적 차원의 주파수 조화결정 이행방안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받는다.¹⁶⁾ 다음의 내용은 회원국

16) 수집된 정보는 'Europa'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들의 주파수 결정 이행 관련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2007년까지 회원국 대부분은 무선주파수의 조화로운 할당에 관한 위원회 결정을 채택하고 있다. 단, 공동체내에서의 주파수 사용과 관련하여 조화로운 정보 이용에 관한 결정¹⁷⁾은 제외되어 많은 회원국들이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채택된 결정의 이행에 대한 입증절차는 주파수 위원회의 규제틀 내에서 진행중이다.

2004년 및 2005년에 위원회가 채택한 무선주파수의 조화로운 할당에 관한 결정은¹⁸⁾ 모든 회원국이 이행하였으나, 불가리아만 아직 주파수대역 조화에 관한 결정(Decision 2005/928/EC)을 이행중에 있다.

2006년에 채택된 2개의 결정은 단거리통신장비(SRD: Short-range Device)용 무선주파수 조화에 관한 결정(Decision 2006/771/EC) 및 RFID용 무선주파수 조화에 관한 결정(Decision 2006/804/EC)¹⁹⁾으로, 2개 모두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이행되었으나, 벨기에의 경우 Decision 2006/771/EC을, 라트비아는 2개 모두 아직 이행중에 있다.

2007년에 위원회는 다음의 주파수 할당 결정을 채택하였다.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policy/radio_spectrum/ref_documents/index_en.htm)

- 17) Decision 2007/344/EC on harmonise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regarding spectrum use within the Community.
- 18) Commission Decision 2005/928/EC of 20 December 2005 on the harmonisation of the 169,4-169,8125MHz frequency band in the Community(frequency band originally designated for the ERMES paging system); Commission Decision 2005/513/EC of 11 July 2005 on the harmonised use of radio spectrum in the 5GHz frequency band for implementation of Wireless Access Systems including Radio Local Area Networks(WAS/RLANs); Commission Decision 2005/50/EC of 17 January 2005 on the harmonisation of the 24GHz range radio spectrum band for the time-limited use by automotive short range radar equipment in the Community; and Commission Decision 2004/545/EC of 26 July 2004 on the harmonisation of radio spectrum in the 79GHz range for the use of automotive short-range radar equipment in the Community.
- 19) Commission Decision 2006/771/EC of 9 November 2006 on the harmonisation of the radio spectrum for use by short-range devices(SRD) and Commission Decision 2006/804/EC of 23 November 2006 on harmonisation of the radio spectrum for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devices operating in the ultra high frequency(UHF) band.

〈표 1〉 EU집행위의 주파수조화결정(2007)

연도	주파수조화결정(spectrum harmonisation decision)
2007	2007/90/EC: 5GHz WAS/RLAN 관련 EC 결정 2005/513/EC의 개정 결정(2007. 2. 12) 2007/98/EC: 모바일위성서비스(MSS)용 2GHz 주파수대역 조화로운 사용 결정(2007. 2. 14) 2007/131/EC: 초광대역(UWB) 설비용 무선 주파수 할당 결정(2007. 2. 21) 2007/344/EC: 주파수 사용 관련 정보의 조화로운 이용 결정(2007. 5. 16)

위 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는 Decision 2007/90/EC 이행상의 문제, 헝가리는 Decision 2007/98/EC,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Decision 2007/131/EC 이행상의 문제, 라트비아는 Decision 2007/98/EC 및 Decision 2007/131/EC 이행 문제로 아직 EU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여개 회원국에서는 Decision 2007/344/EC가 역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2008년 위원회는 다음의 6가지 주파수 할당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위원회는 다음 표에 명시된 결정의 이행 과정을 향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표 2〉 EU집행위의 주파수조화결정(2008)

연도	주파수조화결정(spectrum harmonisation decision)
2008	2008/294/EC: 항공용 모바일통신서비스(MCA) 운용을 위한 주파수 할당 결정(2008. 4. 7)
	2008/411/EC: 전자통신서비스 공급용 지상파 시스템을 위한 3400~3800MHz 주파수대역 할당 결정(2008. 5. 21)
	2008/432/EC: 단거리통신장비(SRD)용 무선주파수 조화에 관한 결정 2006/771/EC를 개정하는 결정(2008. 5. 23)
	2008/477/EC: 전자통신서비스 공급용 지상파 시스템을 위한 2500~2690MHz 주파수대역 할당 결정(2008. 6. 13)
	2008/671/EC: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안전성을 위한 5875~5905MHz 주파수대역 조화 결정(2008. 8. 5)
	2008/673/EC: 169,4~169,8125MHz 주파수대역 조화 결정 2005/928/EC를 개정하는 결정(2008. 8. 13)

(3) 주파수 할당

신규 모바일 3G 주파수가 2008년 할당되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할당될 계획에 있다.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는 올해 할당 계획을 갖고 있으며, 벨기에는 2009년 네 번째 UMTS 라이선스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07년 네 번째 3G 라이선스 할당이 실패로 끝나자, 규제당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장진입자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참여를 적극 권장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2009년 상반기에 3G 주파수 입찰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주파수 대역 15MHz가 경쟁 입찰을 거쳐 할당될 예정이며, 루마니아는 규제당국과 경쟁위원회가 현재 410~415/420~425MHz 대역의 CDMA기술 입찰을 고려하고 있다. 슬로베니아 규제당국은 2009년 상반기에 1개 이상의 UMTS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다.

몇몇 회원국(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스웨덴, 아일랜드)은 3.4~3.8GHz, 2.5~2.6GHz, 25~26GHz 주파수대역 할당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로, 특히 이는 무선 광대역 접속 및 4G 모바일 서비스 적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아일랜드, 폴란드는 모바일 TV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며, 영국은 모바일 TV서비스를 위한 1452~1492MHz 주파수 할당을 완료하였고, 프랑스는 모바일 TV서비스 개시를 위한 입찰을 시작하였다.

아일랜드 규제당국은 900MHz와 1800MHz의 현 라이선스 기한이 끝나면 추가로 사용권을 발급할 계획이며, 이탈리아는 모바일 시장 진입자에게 900/1800MHz 주파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스웨덴도 900MHz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헝가리는 900/1800/2100MHz, 450MHz 주파수대의 모바일 사용권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과정에서 투명성이 문제가 되었다. 폴란드는 신규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두 곳에 900MHz 주파수를 할당하였고, 450~470MHz 주파수대의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들을 상대로는 입찰을 실시하였다. 불가리아는 1800MHz 무선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였고, 오스트리아는 450MHz 대역의 입찰이 실패로 돌아갔다.

2008년 6월 30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모바일위성서비스(MSS)를 공급하는 시스템 인가 선정에 관한 결정²⁰⁾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투명하고 합법적인 범유럽적

MSS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위원회는 2008년 12월 11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현재 까지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2008년 4월 7일 위원회는 항공기 부문에 모바일통신서비스(MCA)를 도입한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항공사 일부는 MCA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IV. 결 론

올해 EU와의 FTA가 가서명 완료되고 내년 초 정식서명과 연말 비준을 목표로 하고 FTA 발효를 가시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EU 집행위보고서는 우리가 규제와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찾아주는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다.

폴란드 등 동유럽국가에 잔재하는 규제기관 독립성 문제, 유무선 및 광대역 시장별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규제 사례, 보편적서비스 의무 불이행 및 행정수수료 비용간의 문제, 주파수 이행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2008년 이후 채택한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 관련 이행규칙 등은 향후 한-EU FTA 비준 및 발효시 우리가 주목하여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할 부분이다. 매년 회원국들의 EU 규제를 이행노력 및 지연 또는 실패에 대해 FTA 상대국인 우리가 아니라 집행위원회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율규제의 상황은 우리에게 더할나위 없이 좋은 모니터링 도구이다.

EU의 통신 규제제도는 우리의 제도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FTA 협상시 상호 조율 및 상대방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협상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협상이 끝난 현 시점 이후로는 EU 회원국마다 다른 규제제도 및 규제관행을 철저히 검토하고, EU라는 단일한 공동체 차원에서 규제의 조화를 위해 이행 노력에 힘쓰는 모습을 반추함으로써, EU 시장에서의 우리기업 진출에 규제 정보가 기반이 되도록 하고, 반대로 EU 기업의 우리시장 진출에 대한 대비를 위해

20) Decision No 626/2008/EC on the selection and authorisation of systems providing mobile satellite services(MSS)

우리나라 규제제도를 점검해보는 것이 FTA 후속 이행조치의 가장 적절한 자세라고 생각된다. EU와의 FTA를 통해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통신 분야의 실익을 잃지 않기 위해 본고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항시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FTA는 양자간의 협상이라 상대국의 이행만을 검토하면 된다. 그러나 EU는 27개 회원국 구성으로 인해 마치 WTO와 같이 다자간의 조화를 이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로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인 만큼 통신시장에 대한 자체 점검을 EU 사례를 거울로 삼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강하연 외(2008), FTA 협상대상국 통신서비스 시장개방현황 및 규제제도 조사 자료집, KISDI, 2008. 12.
- 강하연·김성웅·박민정(2007), “한-EU FTA 주요 협상이슈에 관한 소고”, KISDI 이슈리포트, 2007. 11.
- 외교통상부(2009), 보도자료 제09-124호, FTA협상총괄과, 2009. 3. 20.
- _____ (2003), FTA 추진 로드맵, 2003. 8.
- _____ (2007), 전략적 FTA 추진 현황 및 계획, 2007. 4.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fta.go.kr), 자유무역협정.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글로벌윈도우.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무역통계자료.
- 《선진미래연대》(2009. 10. 16), “한-EU FTA 가서명… 내년 1분기 정식서명”
- 《내외통신》(2009. 3. 17), “외교부, 한-EU FTA 효과 한-미 FTA보다 크다”
- BMI(2009), “Telecommunications Report”, 2009. 6.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 Progress Report on the Singl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Markets 2008(14th Report), 2009. 3.

EU Directive(2002a), Framework Directive,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ated 7 March 2002.

_____ (2002b), Access Directive,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ated 7 March 2002.

_____ (2002c), Universal service Directive, directive 2002/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ated 7 March 2002.

OECD(2009),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9.

Paul Budde(2008), “Key Statistics, Telecom Market & Regulatory Overviews”, 2008. 11.

EuRopa Homepage(ec.europa.eu)

<첨부 1> 한-EU FTA 협상 추진 경과

일시	내 용
2003. 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2006. 5. 15	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필리핀), 한-EU FTA 예비협약의 개최 합의
2006. 7. 19	제1차 한-EU FTA 예비협약의 개최(브뤼셀)
2006. 9. 26~27	제2차 한-EU FTA 예비협약의 개최(브뤼셀)
2006. 11. 24	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2006. 12. 6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2007. 4. 9	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의
2007. 5. 1	대외 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2007. 5. 6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2007. 5. 7~11	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07. 7. 16~20	한-EU FTA 제2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 9. 17~21	한-EU FTA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 10. 15~19	한-EU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7. 11. 19~23	한-EU FTA 제5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8. 1. 28~2. 1	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서울)
2008. 5. 12~15	한-EU FTA 제7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9. 3. 23~24	한-EU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 원산지 규정, 관세환급 등 일부 쟁점 제외하고 잠정 타결
2009. 4. 2	런던 통상장관회담에서 관세 환급 문제로 최종타결 실패
2009. 7. 13	스톡홀름 정상회담에서 한-EU FTA 협상종결 선언
2009. 10. 15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 가서명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재정리

<첨부 2> EU의 FTA 체결현황

(2009. 11월 현재)

구분	대상국가	내역
기체결	EU 회원국	모든 분야 포함
	안도라공국	1991년 발효, 공업제품에 한한 관세동맹
	터키	1995년 발효, 공업제품에 한한 관세동맹
	불가리아	1993년 발효, 서비스 교역 포함
	루마니아	1993년 발효, 서비스 교역 포함
	EFTA	1994년 발효, 서비스 교역 포함 (EFTA: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개국만)
	덴마크령 페로제도	1997년 발효
	PLO	1997년 발효
	튀니지	1998년 발효
	크로아티아	2001년 발효
	북아프리카국가	이스라엘 2000년 발효, 요르단 2002년 발효, 레바논 2003년 발효
	칠레	2003년 발효, 협정문에는 서비스, 투자 포함, 현재 상품만 발효
	멕시코	2000년 발효, 서비스, 투자, 지재권 포함
	남아공	2000년 발효, 협정에는 서비스 분야가 포함, 잠정적으로 상품교역분야만 발효
	모로코	2000년 발효
	이집트	2004년 발효
	알제리	2005년 발효
	크로아티아	2005년 발효
	마케도니아	2006년 발효
	알바니아	2006년 발효
CARIFORUM	2008년 10월 발효	
협상중	한국	2007년 협상 개시, 2009년 10월 가서명
	GCC	2002년 3월 협상 개시, 지속적인 추가 협상중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
	이란	2002년 12월부터 논의 개시, 핵사찰 문제로 협상 중단 상태, 3차례 협상 개최
	MERCOSUR	2000년 협상 개시, 2003년 10차를 끝으로 교착상태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터키	2000년 협상 시작
	CAN	안데안공동체와 2007년 9월 협상 개시 (안데안 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4개국, 6개국이었으나 칠레, 베네수엘라 탈퇴)
	ASEAN	2007년 협상 개시, 7차례 회의 개최
	인도	2007년 6월 협상 개시, 2009년 3월 6차까지 진행
	콜롬비아	2009년 2월 1차 협상 개시
	페루	2009년 2월 1차 협상 개시
검토중	캐나다	2009년 6월 공식회담 개최
	싱가포르	고위급 차원에서 FTA 가능성 논의
	일본	공동연구 2008년 7월 완료
	캐 나 다	2002년 12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FTA 가능성 검토 지시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재정리